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드라이브 스루 시설업소 추가〉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34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18.

다.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와 같은 업종과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 교통 혼잡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 시설(이하 “승차구매점¹⁾”이라 함)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 ----- ----- -----제32호 ----- ----- ----- ----- ----- ----- ----- ----- -----
1. ~ 31. (생략)	1. ~ 31. (현행과 같음)
<신설>	3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 시설

1) 지난 2015년 1월, 국립국어원은 ‘드라이브스루’의 순화어로 ‘승차 구매점’을 제시함.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은 제2조제1호2)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교육환경”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9조3)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현행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4)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으로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고,

해당 구역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등의 시설(교육환경법 제9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5)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참고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의 범위 안에서 행위 및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담배자동판매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의 행위 및 시설(교육환경법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나누어지고 있음.

<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내용
절대보호 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 지역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금지 (제9조제1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상대보호 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음식을 구매하는 승차 구매점 형태의 업종 및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 교통 유발과 사고 위험이 증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이러한 교통 혼잡은 교육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교통 흐름의 방해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우려됨.

이에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승차 구매점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⁶⁾,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유형화할 때 차량 통행 방해 51.4%(576건), 보행 불편 32.2%(361건), 매장 구조 및 안전시설물 문제 9.7%(109건)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개선방안과 관련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의 89.9%(302명)가 승차 구매점의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입지 제한 필요 순위는 교차로 인접 장소 38.4%(116명),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 30.5%(92명) 등 순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승차 구매점으로 인해 차량 통행 방해, 보행 불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입지 제한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입지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개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다만, 승차 구매점은 현재 “식품접객업”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시설기준 및 입지 제한은 없으나, 교통혼잡에 대응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최근에 마련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승차 구매점은 인접한 도로에 교통혼잡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⁷⁾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6) 국민권익위원회,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 분석, 2021.1.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

1,000m²를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교통유발부담금⁸⁾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매장의 진·출입 시 보도(인도)를 횡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2018. 5.)을 통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음.⁹⁾

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8)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에 해당됨.

9)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1. 1. 5.>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 승차 구매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영업실태 조사, 도로점용허가 시 반영해야할 주요 사항, 교통안전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승차 구매점 관련 조례 현황 >

지역명	법령명	공포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2021. 12. 30.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2. 26.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2021. 4. 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2021. 9. 2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2023. 10. 4.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12.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2023. 2.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2023. 5. 1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2023. 6. 3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2023. 7. 10.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2024. 8. 14.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입지 제한을 설정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방안과,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승차 구매점 관련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

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만약 개정안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이 추가될 경우에는 종전에 설치·운영 중인 해당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설치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한 적용례 등을 부칙에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부는 승차 구매점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지만,

해당 업종이 직접적으로 유해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교통 유발 측면에서 유사한 영향을 끼치는 다른 업종(대형마트, 주유소, 백화점, 여객자동차터미널 등)과의 규제 형평성 차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미 「도로법」 제61조제2항¹⁰⁾에서 승차 구매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위치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도로 점용 허가 시 학교·유치원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은 차량의 통행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교통에 따른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특정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하거나 새로이 추가하기 위해 현행법 제9조의 각 호를 개정하려는 다른 개정안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계류 안건 현황 >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2200241	송재봉의원 (2024.6.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 추가
2200276	이재정의원 (2024.6.1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전기버스 충전소 등 추가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 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

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 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